

서울특별시

훈령

개정

발령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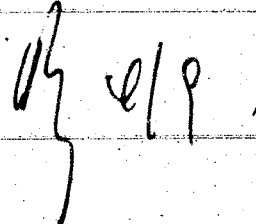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02124-576

시행일자 1992. 4.10

(경유)

수신 자 안 참조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제계장			
기안	박상영		
			합조

제목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중개정규정 발령

(제 1 안) 내부 결재

1.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발령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2부, 끝.

훈령제 251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행정과장

제목 훈령발령

1. 행정02124-420 (92.4.03)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검열
1992. 4. 10
통계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형정실적삼사규정중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2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원인

서울특별시구행정실적심사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구행정실적심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및 구에서 실시하는 동행정실적심사(이하 "동심사"라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호중 "구또는 동행정"을 "구행정"으로 하고 제4호중 "지도력"을 "지역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으로 한다

제3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관장의 지역관리능력, 계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평가사항은 이를 별도 평정한다"

제7조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매분기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10일까지"를 "매반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매년 7월에, 하반기분을 다음해 1월에"를 "매년 6월에, 하반기 종합분을 매년 12월에"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이규정에 의한 반기별 구심사 평점은 매년말 이를 총 합계 하여 구의 순위를 사정하고 이 순위에 따라 시장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우수기관 6개구에 대하여는 기관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한다
2. 심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표창한다
3. 부진기관 3개구에 대하여는 관리직 순환인사에 반영한다
4. 우수기관에 지급하는 시상금및 분야별 표창인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야 구행정실적심사결과 평가표

19

반기

○○국장(인)

구분 구별	총 평 점		순 위	평 가 내 용
	평 점 계	환산점수		
총 로 총 구 용 산 성 동 동 대문 총 담 성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 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영 동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 환산점수 : 국별 배점기준으로 환산한 점수